

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공고

「도시개발법」 제9조(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) 제8항 및 같은 법 제72조(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 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“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”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. 11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고내용 : 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
2. 공고기간 : 2015. 11. 20. ~ 2015. 12. 4.(15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,
4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성 명	주 소	행위위치	지적면적 (성토면적)	행위내용	관련법규
박경희	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37-4 현대아파트 305동 301호	경서동 124-52	2,807㎡ (2,807㎡ ²)	무단형질변경 (성토)	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제5항 위반
정경숙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2 보람마을 1111동 1803호				
이준옥	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11-126 현대아파트 207동 105호	경서동 124-54	2,896㎡ (2,896㎡ ²)	무단형질변경 (성토)	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제5항 위반

5. 근거법규 :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제5항 및 제8항, 같은법 제72조 제2호,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.
6. 기타사항 :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(원상복구)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
따라 조치(고발 등)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산상,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
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7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82). 끝.